

# 『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3년 4월 4일

나. 발 의 자 : 신용하, 김근한, 김영태, 김정도, 박세채, 양진오,  
이명희, 이상호, 이정희, 이지연, 장세구, 추은희,  
허민근 의원 (13인)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4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4월 13일

제26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신 용 하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단서규정을 마련하여,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기 위함.

## 다. 주요내용

-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에 단서 규정 추가(안 제5조 제1항)

#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차 병

- 「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의 일부개정으로 신설된 제2조 2항에서 “천재지변 등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할 수 있다”는 단서의 내용을 반영 하는 것으로, 상위 법령에 배치됨이 없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 략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